



새만금 국가산업단지 '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' 지정

- 제30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-

- (파격적 세제혜택) 투자기업 법인세, 소득세 첫 3년 100%, 이후 2년 50% 면제
- (확실한 수질개선)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의 영향으로 대표지점 모두 목표수질 달성

□ 새만금위원회*(위원장 : 한덕수 국무총리, 공동위원장 :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)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(서면회의, 6.20.~6.27.)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(안)(심의 안건)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(보고 안건)를 심의하였다.

* 새만금위원회 개요(붙임1)

<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(안)(새만금개발청) >

-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'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'을 논의하였다.
 -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「새만금사업법」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('22.12월)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,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받을 수 있다.
 -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「새만금사업법」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'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'하기로 심의·의결하였다.

-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·2·5·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,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.8배인 8.1km²이다.
 -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.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,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,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·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.
-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,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.

< 새만금유역 제3단계('21~'30)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(환경부) >

-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'새만금유역 제3단계('21~'30)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'를 심의하였다.
 -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 '강과 호소, 해양을 잇는 “깨끗한 물”의 확보'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,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*로 설정하고 있다.
 - * Ⅲ등급(총유기탄소(TOC) 5.0mg/L 이하, 총인(T-P) 0.05mg/L 이하 등),
Ⅳ등급(총유기탄소(TOC) 6.0mg/L 이하, 총인(T-P) 0.1mg/L 이하 등)
 - 환경부, 농식품부,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,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,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, 총 1,042억원이 투입되었다.
 - ※ <참고> 2022년 추진 세부대책(29개) 추진현황
 -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.
 - * '20년 대비 '22년, 만경강 T-P 23.9% 개선, 동진강 T-P 32.1% 개선
 -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(일1회→2회)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하였다.
 - * '22년 기준, 도시용지 대표지점 Ⅰb~Ⅲ등급, 농업용지 대표지점 Ⅰb~Ⅳ등급 수준으로 목표수질 모두 만족

- 한편,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·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.
 -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,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‘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하여,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.
-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.

- 【붙임】** 1. 새만금 위원회 개요
 2. 제1호 안건 요약
 3. 제2호 안건 요약

담당 부서 <총괄> 위원회 운영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정승진 (044-200-1902)
	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담당자	사무관 이호열 (044-200-1905)
담당 부서 <공동> 수질개선대책	환경부	책임자	과 장 이상진 (044-201-7001)
	물환경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천지은 (044-201-7015)
담당 부서 <공동> 투자진흥지구	새만금개발청	책임자	과 장 김진후 (063-744-1080)
	계획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이지호 (063-744-1084)
담당 부서 <공동> 투자진흥지구	전라북도	책임자	과 장 양주생 (063-280-2080)
	새만금개발과	담당자	사무관 손미정 (063-280-2773)

□ 설치 근거 :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

-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, 관리 및 환경보전 등 **중요사항을** 심의하기 위해 **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**(’09.1.14~)

※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(새만금사업법 제33조의 2)

□ 구 성

- **위원장**(국무총리, 민간 공동위원장) 포함, **30인 이내(現 29명)**

* 민간 공동위원장 : 박영기 전북대 교수

- **당연직(13)** : 기재·과기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새만금청장, 전북도지사

* **공동간사** : 국조실 경제조정실장, 새만금개발청 차장

- **위촉직(14)** : 농업·환경·해양·도시·문화 분야 전문가 등

**□ 기 능 :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·관리 및 환경보전 등
중요 사항 심의**

- 새만금 기본계획,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, 개발계획,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

○ 연차별 투자계획,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관리·운영

○ 기타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 등

1 추진배경

□ **추진경과**

- 새만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반영
- '22년말 「새만금사업법」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완료
 - * 「새만금사업법」 '22.12.27. 개정, '23.6.28. 시행 / 「조세특례제한법」 '22.12.31. 개정, '23.1.1. 시행

□ **지정 필요성**

-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부여되는 조세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- 법 개정 시행일(6.28.)에 맞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최초지정
 - * 지구 지정 이전 투자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'18.4.5.~'23.4.4.)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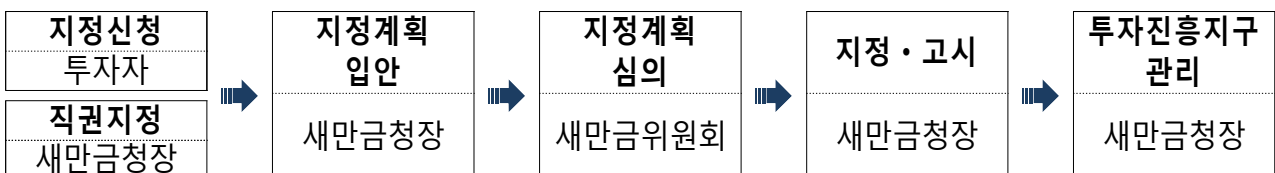
2 제도개요

□ **투자진흥지구 정의 및 요건**

-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
 - *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, 공유수면 점용·사용료 10년간 면제
-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~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~30명 이상의 고용 필요(제조업은 20억원, 30명 이상)

□ **지정방법 및 절차**

- (방법)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
- (절차)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



3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(안)

□ 지정개요

- (명칭)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
- (위치) 국가산업단지 1·2·5·6공구(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)
- (면적) 8.1km²(245만평, 여의도 면적의 약 2.8배)

위치도	각 공구별 위치 및 면적
	

※ 매립이 완료된 1·2·5·6공구를 우선지정하고, 잔여공구는 매립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지정

- (지정 방식)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
 - *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대부분은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으로, 개별기업이 지정신청을 하기에는 관련 행정절차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

4 향후 계획

-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고시
- 투자진흥지구 전담인력·예산 등 관리체계 마련
- 스마트수변도시 등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

1 제3단계 대책 주요내용

단계	목표수질 (단위 mg/L)		주요 내용
	농업용지구간	도시용지구간	
3단계 ('21~'30)	·TOC: 6.0 이하 ·T-P: 0.10 이하 (Ⅳ등급)	·TOC: 5.0 이하 ·T-P: 0.05 이하 (Ⅲ등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4개 대책(144개 사업), 총사업비 1조 6,875억원 • 2단계 수질개선 우수사업 지속, 추가대책 발굴 - (지속) 하수관로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- (추가)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집중 관리 • 단기('21~'23년), 중장기('24~'30)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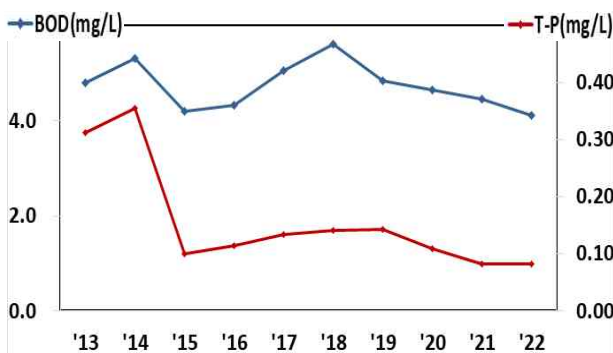
2 수질여건 및 현황

- (수질여건) 농업 및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, 오염원이 유역 전반에 넓게 분포되어 수질 관리에 어려움
- (수질현황) **만경강·동진강** 2단계('11~'20) 대책 추진 이후 모두 개선 추세*, **새만금호** 해수유통 확대** 이후 '22년 현재 4개 대표지점 모두 목표수질 만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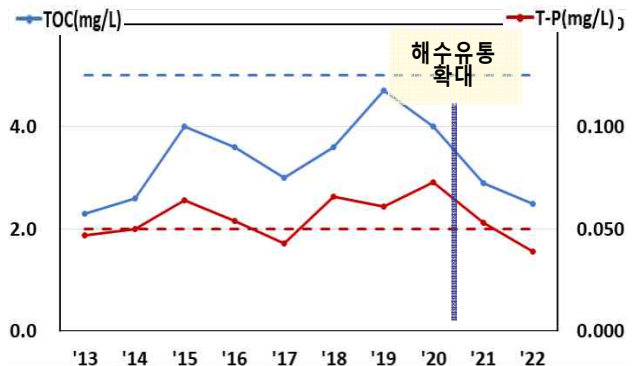
* (하천) '20년 대비 '22년, 만경강 T-P 23.9% 개선, 동진강 T-P 32.1% 개선

** (호내) 일 1회(주간)→2회(주야간)) 후 해수유통량 증가('20.12~)

【만경강 김제지점】



【새만금호 북측 대표지점】



3 2022년 추진실적 평가결과

- '22년 계획된 수질개선대책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
 - 다만, 비점오염저감시설(인공습지)은 소요부지 협의매수 지연, 우분연료화시설은 혐오시설 주민반대로 지연
 - ⇒ (비점저감시설) 추진상황 수시 점검 통해 부지확보 곤란 지속 시 사업 방식 변경 검토, 신규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 사전 심사
 - ⇒ (우분연료화) '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*' 체결('23.5) 통해 우분연료 사업모델 구축 및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
 - ※ (참여기관) 전북청, 지자체, 국립축산과학원, 지역축협, 열병합발전소(한화에너지 등)
 - (예산 투입) '22년 투자계획(2,314억원) 대비 45%(1,042억원)가 실제 투입되어 계획 대비 예산 투입은 다소 부진
 - ※ 예산 규모가 큰 환경기초시설 사업 대부분이 사업초기 단계로 본공사 추진 시 개선 예정
- 해수유통 확대 이후 새만금호 물순환체계 수질모델링 분석을 통한 최적 수질관리방안* (배수갑문 개폐방식 : 동시개폐→순차개폐) 도출
 - * 새만금호 물순환체계 분석 및 수질관리방안 마련 연구('21.12.~'23.2.)

4 향후 계획

-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지속 추진, 그간 연차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단기대책 종합평가 대비 개선사항 보완
- 관계기관 합동 단기대책('21~'23년) 종합평가* 추진('24.上)
 - * 단기대책 수질개선효과 분석, 해수유통 효과분석, 목표수질 달성 여부 평가 등

참 고

2022년 추진 세부대책(29개) 추진현황

			지연 과제
권역	대책명	세부대책명	추진상황
상류 (21개)	점오염원 관리 (3개)	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	추진 중
		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	
		하수관로 확충 및 정비	
	비점오염원 관리 (7개)	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관리	추진 중
		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	지연 (토지 협의매수 지연 등으로 사업 지연)
		생태하천복원	추진 중
		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추진단 구성·운영	
		유역단위 통합 비점오염저감 사업	
		완충저류시설 설치	
	전주천 불명오염원 관리		
	가축분뇨 관리 (7개)	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	추진 중
		우분연료화시설 설치	지연 (혐오시설로 인식 주민반대 등)
		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	추진 중
		휴·폐업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	
	양분관리제 시범사업 및 확대		
	하천유지용수 관리(3개)	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·관리 강화	추진 중
		축산계 오염원 관리 이행지원	
어우보 운영개선			
기타(1개)	만경강 백구제수문 개선	추진 중	
	기능상실 보 철거 및 복원	추진 중	
호내 (4개)	호소환경관리 (3개)	수질오염총량제 시행	추진 중
		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	추진 중
	내부개발 (1개)	적조·녹조 대책	
해양 (2개)	해양보전 (2개)	환경생태용지내 인공·호안습지 조성	추진 중
		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	
기타 (2개)	물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(2개)	해양수질보전대책 수립(R&D)	추진 중
		물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	
		새만금 물환경 장기조사 연구	추진 중

※ 3단계 수질개선대책(44개) 중 '23년 이후 추진대책(15개) 제외